「2025년 경기도 공동활용 연구장비 사용료 지원」 기업 모집 공고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도내 중소기업의 제품개발 역량강화를 위한 「2025년 경기도 공동활용 연구장비 사용료 지원」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 3. 6. 경기도지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 2025년 경기도 지원사업 사항 (필독) <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

경기도 내 기업의 건전한 기업 문화를 조성하고 기업 선정의 효율성,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정된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제6조에 따라 2025년 1월 17일 "경기도 기업 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을 고시하여(경기도 고시 제 2025-23호) 최근 2년 내법 위반 기업에 대한 경기도 지원사업을 평가시 총점의 20% 감점을 적용하며 이에 따라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기업의 법위반 사실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시 원 개 요

- □ 지원목적
 - 도내 중소기업의 제품개발 및 사업화를 적극 지원하여 공유경제 실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 수행기관 :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 지원대상 : 경기도 소재 벤처, 중소기업
 - 본사(또는 공장, 연구소)가 경기도에 소재하면서 다음사항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 「벤처기업 요건」에 해당 기업
- □ 지원 내용 : 주관기관 연구장비(장비기반 기술서비스 포함) 사용료 지원

- □ 지원 규모: 140백만원, 35개社 이상
 - O 연구장비 사용료 기업 당 4백만원이내 1회 지원(창업년수 : 공모일 기준, VAT 제외)
 - 창업 3년미만 기업 : 100% 지원(자부담 없음)
 - 창업 3년~7년미만 기업: 80% 지원(자부담 20%)
 - 창업 7년이상 기업 : 70% 지원(자부담 30%)
 - ※ 연구장비 공동활용 촉진을 위해 지원금 기준 80만원 이상 활용건 지원
 - ※ 졸업제 시행 : 3회 연속 수혜시 2년간 지원 불가

예산 배정	1차 사용료 지원^① (6월말까지 사용액)	2차 사용료 지원^② (9월말까지 사용액)	비고
예산액	56백만원 [®]	84백만원 [®]	

 $^{^{\}circ}$ l차 사용료 지원은 공고일로부터 6월말까지 사용한 장비사용료를 접수·지원함

□ 지원 절차 (별첨자료 참조)

<u>공고일 이후</u> 주관기관의 연구장비·기술서비스를 활용한 도내 중소기업 연구개발· 제품개발의 '장비사용료'를 접수순 사용료 지원.

절 차 ①기업장비활용·집행 → ②장비사용료 신청(7월/10월) → ③장비사용료 지급

- ① 기업장비활용·집행 : 도내 대상 기업은 공고일 이후 주관기관 장비활용, 사용료 집행
- ② 장비사용료 지원 접수 : 장비활용 증빙서류를 2회(7월/10월)의 사용료 지원 접수
- ③ 장비사용료 지급 : 사용료 지원 신청 기업 중 접수순 적격성 검토·지급
- 2 시 신 청 안 내
- □ 신청기간
 - (1차) 2025. 7. 10.(목) ~ 7. 17.(목)까지
 - (2차) 2025. 10. 10.(금) ~ 10. 17.(금)까지
- □ 신청방법 : 신청서 및 관련 제출서류 홈페이지 접수(https://gginfra.gbsa.or.kr/)
- □ 제출서류(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②2차 사용료 지원은 공고일로부터 9월말까지 사용한 장비사용료를 접수·지원함

^③장비사용료 지원 신청 상황에 따라 예산 범위내 일부 조정 가능

78	제출서류			
구분	서류명	제출서류(발급처)	비고	
장비사용료 신청 서류 (7/10월)	① 사용료자원 신청서 및 기술(제품)설명서, 설문조사서	(첨부)서식 제1,7호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본사, 공장등록증,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포함		
	③ 벤처·소공인·중소기업 증빙 서류	중소기업 등을 입증하는 서류		
	④ (주관기관 발행) 세금계산서			
	⑤ (장비사용료) 이체내역서		(납부확인 내역)	
	⑥ 기업(법인) 통장 사본	신청 기업 명의	(법인사업체인 경우 법인명의 계좌)	
	⑦ (주관기관 발행) 결과 증빙자료	시험분석보고서, 성적(인증)서, 시제품제작결과 등	(주관기관 발행 문의)	
	⑧ 참여의사확약 및 청렴이행서약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첨부)서식 제2,3호	직인날인된 PDF파일	
	⑨ 기업 법위반 사실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첨부)서식 제4호	직인날인된 PDF파일	
	⑩ 기업 법위반 사실(부존재)여부 확약서	(첨부)서식 제5호	직인날인된 PDF파일	
	①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유효기간 확인필수)	 국세 : 국세청홈텍스 지방세 : 민원24 	(신청일 기준 2개월 이내 발급분)	
	① 주관기관 발행 거래명세서 또는 장비활용내역서	주관기관 발행	(장비·서비스 상세내역 필수 기재)	

3 시 원 제 한

신청 이후라도 공고일 이후에 지원제한 사항이 확인된 경우, 지원 취소 및 보조금 (지원금) 즉시 환수 조치 될수 있음.

- □ **공모일** [2025. 3. 6.(목)] **기준**, 신청과제의 기업대표, 연구책임자등이 다음 각 호의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
 - ㅇ 공고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자격이 부합하지 않는 때
 - 신청과제가 지원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기존 공고 또는 타 기관 사업계획서를 활용한 경우
 - 이 의무사항 불이행 시
 - 신청과제의 기업대표, 연구책임자 등이 공모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 o 기업대표, 연구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ㅇ 기업대표, 연구책임자 등이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 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검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 토 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기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준 (단, 법원의 인기를 받은 화상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6.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기업, 신청기업대표, 연구책임장의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 조치

4 선정방법

- □ 선정방법 : 「적격판단기준」에 따른 검토
 - 이 제출된 제반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및 분야에 대한 적격성 검토로 판단하며, 활용기업 사용료 지원에서 접수 순으로 우선권 부여
 - 작격성 판단은 한 항목 당 20점을 부여하고, 부적격 대상 기업은 제외하고 활용승인 및 지원 기업을 결정함(적격성 검토 90점 이상 기업)
- □ 지원안내 : 2025. 7월/10월 내(지원금 지원 기업에 개별 안내)
 - ㅇ 해당 월에 신청서 상의 실무자 전자메일로 개별 통지함
 - ㅇ 신청서의 오류기재로 인한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5 | 적격판단기준

- □ [소재] 경기도 소재 기업
 - ㅇ 대상: 본사, 공장등록증,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의 소재지가 경기도인 기업
- □ [규모] 벤처 또는 중소기업인 기업
 - ㅇ 벤처 또는 중소기업 등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 [대상] 주관기관 장비 또는 장비기반 서비스 활용 및 완료 여부
 - ㅇ 당 사업의 참여 주관기관 장비활용 판단(주관기관 발행 견적서 기준)
- □ [불이행] 필수 제출서류 미비, 누락 등 제출 의무 불이행 기업
 - ㅇ 활용승인 및 사용료 지원 신청/접수 시 필수 서류 누락 등 제출 의무 불이행 기업
- □ [제한] 법위반 지원 제한 또는 제재, 부정수급, 이중지원 등의 기업

- ㅇ 경기도/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지원 제한 등 법 위반 제한 기업
- ※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은 총 평가 점수에서** 20% 감점 적용(공모일 기준 2년이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
 -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물환경보전법」
 - 「국세기본법」,「지방세기본법」

6 추 진 절 차

절	차	내 용
① 안내공고	'25. 3. 6.~ 10. 17.	· 연구장비 사용지원 모집 공고
② 장비사용 및 집행	개별 진행	· 기업 자부담으로 장비사용·결제 진행
③ 장비사용료 지원 접수	'1차(25. 7. 10.~17.) '2차(25. 10. 10.~17.)	· 장비활용 결과 및 증빙서류로 지원금 신청 접수 (접수순으로 예산범위 내 지원)
④ 장비사용료 지원	25. 7월말/10월말(예정)	· 접수순 기업 장비사용료 지급 (예산소진시까지)
⑤ 성과 활용 공유	26년부터 28년까지	· 성과 공유 미협조 기업(지원 대상 제외 조치)

7 │ 기타사항

- □ 장비활용 승인 신청 및 지원금 신청 접수시 관련 자료 필수 제출
- □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채무불이행 등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 대해서 동의한 것 으로 간주
- □ 도지원금의 부정수급 시 재제 조항
 - 이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제9조에 따라 환수 및 재제부가금(사용액의 5배 이내) 부과
 - ㅇ 부정행위 기업 및 대표 명단 공개
 - o 연구부정행위자는 경기도 지원대상에서 영구배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 □ 지원 졸업제 시행
 - ㅇ 연구장비 사용료 지원 사업 기업 당 최대 3회까지 지원
 - 기준년도 : 2024년 과제부터 적용
 - 해당 기업은 2년간 지원대상 제외

- □ 지원 승인 후 포기 및 다음의 사유 발생 시 지원 제한(지원 취소)
 - ㅇ 사업공고 시 명시된 지원 분야와 신청 내용이 상이한 경우
 - ㅇ 신청서 허위 기재 및 허위 증빙자료 제출한 경우
 - 아 사업계획서 양식은 본 공고에 첨부된 서식을 활용하지 않고 기존 공고 또는타 기관 사업계획서를 활용한 경우
 - ㅇ 사업여건 변동으로 사업 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
 - ㅇ 접수마감일 이후 지원 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경우
 - ㅇ 기업의 사정 등에 의하여 포기한 경우

8 문의 처

전담기관	연락처	E-mail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US1/000-EUVS E1VU	ragon38@gbsa.or.kr
바이오인력양성팀	031)888-6943, 6149	choiyh1400@gbsa.or.kr

※ 통화량이 많아 전화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e-mail로 문의바랍니다.

붙임: (서식1,2,3,4,5,6,7) 장비사용료 지원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참고)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조례에 따른 법위반 기업 조회 참고자료

□ 추진절차 및 일정

절 차	일 정	세 부 내 용
사업공고	2025.3.6.~10.17.	· 경기도 공동활용 연구장비 사용료 지원 사업 시 행공고 · 공고주체: 경기도
↓		
장비활용	2025.3월~9월	· 수요기업 ↔ 주관기관 · 장비활용 후 사용료 기업 부담 지출 · 장비활용 후 사용료 지원 증빙자료 준비
1		
장비사용료 지원 접수	①차 2025.7.10.~17. ②차 2025.10.10.~17.	· 활용기업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사용료 지원 접수: 접수순 예산내 지원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관련 서류 등 · 1회, 최대 4백만원 한도 내 지원
<u> </u>		
장비사용료 지원	①차 2025.7월말 ②차 2025.10월말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활용기업 · 장비 활용/집행/납부/결과 증빙서류 검토 지급 · 2차 지원의 경우 예산 범위 내 지급
+		
장비활용 성과 공유	2026년 ~ 28년	· 지원기업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2028년까지 장비활용 성과 공유 조사 실시 ※ 미보고시 장비사용료 지원대상 제외 조치

- * 상기 사업 추진일정은 사업 예산 및 일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등 안내는 경기도 연구장비 공동활용사업 홈페이지(http://gginfra.gbsa.or.kr)에서 확인
- * 사용료 지원은 기업당 최대 4백만원, 1회 한정 지원하여, 활발한 연구장비 공동활용 촉진을 위해 지원금 기준 80만원 이상 활용건 지원
- ※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하며 2차 지원 마지막 기업은 예산 일부만 지원할 수 있음